공고번호 : 제26-39호

용 역 입 찰 공 고

입찰공고일 : 2026.11.24.
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 재무원

※ 본 입찰공고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을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의거 제안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수요부서 담당자(과업내용 등) : 서울적십자병원 총무팀 ☎ 02-2002-8762
○ 계약부서 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서울적십자병원 구매시설팀 ☎ 02-2002-8450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서울적십자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위탁관리용역
○ 수요기관(부서) : 서울적십자병원(총무팀)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실적제한 / 중·소기업
○ 낙찰자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름
○ 입찰공고기간 : 2026.11.24. ~ 2027.01.04. 10:00까지
○ 배정예산 : 금1,116,000,000원(금일십일억일천육백만원정) / 부가세 포함 / 36개월 총액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6개월(3년)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찰 일정이 지연 될 경우 계약 체결일을 계약 시작일로 합니다.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가격입찰서제출	2026.11.24.(화)~ 2027.01.04.(월)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등록서류 제출		서울적십자병원 4층 구매시설팀
제 안 서 제 출		서울적십자병원 4층 총무팀
개 찰 일 시	2027.01.04.이후	계약담당자 PC
제안서 평가일시	2027.01.04.이후(별도 통보)	서울적십자병원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내 공지사항 등)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미만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67호, 2026.11.9)를 준수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소속회사”는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함)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날까지 전산 업무(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상급 종합병원 또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단일건**으로 원무, 진료, 진료지원 시스템과 EMR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자

※공동계약 실적인 경우 계약건당 출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인정

※상급 종합병원이란 제5기 보건복지부 지정 상급종합병원을 의미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 수급 형태로 제안할 때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 관례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 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체는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10% 이상) 및 구성원 참가 조건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제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1.2.)에 따르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단, 상용 S/W 패키지 도입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서비스 인력 투입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해당사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음

※ 개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요망

3. 입찰보증금

○ 입찰총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전자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미 납부 시 입찰은 무효입니다.

(서울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110-82-00884)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주요 사업내용(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기존 프로그램(OCS/EMR)에 대한 업그레이드, 패치, 수정, 보완

○ 기존 시스템 운용 범위 내의 신규 프로그램 개발

○ 원무행정, 수가 및 처방 변경, 신설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 원무 및 청구 미수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업무 지원
○ 의약품 또는 일반 재고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직원들의 전산 업무 교육 및 각종 통계자료 처리

5. 입찰 참가 등록 제출 서류

○ 안내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출기한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전자제출**	2027.01.04. 10:00
- 입찰참가신청서(붙임 서식1)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업종코드 146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실적증명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 시 붙임 서식2)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1부 - 입찰보증금서(증권 또는 납부 증빙) 1부 - 인감 지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1부, 4대보험 중 1개 가입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서울적십자병원 본관 4층 구매시설팀 방문 제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8부(출력본) (제안요청서 내 요구 서류 일체) - 제안서 전산파일 USB 1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사업실적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서울적십자병원 본관 4층 총무팀 방문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은 무효로 처리되며, 계약 담당 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게 될 경우 최초공고에서 입찰참가 자격신청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자격 관련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 및 날인 필수

6. 제안서 제출 방법

○ 제안서 작성 방법 : 붙임 파일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 출력본 및 전산파일 마감 일시까지 오프라인 제출

7. 가격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 가격 입찰(투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6개월 총액을 전자입찰서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미리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예정가격 및 협상순위 선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제안서 평가(90점) 및 입찰가격 평가(10점)로 평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제안한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제안서 평가 결과 85%(90점 만점에 76.5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안서 평가는 병원에서 정한 평가 기준에 의함(제안요청서 참조)

※ 동점자 선순위 처리기준: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① 지원조직 ② 시스템/기능 요구사항 ③ 보안/운영 요구사항 순서로 배점이 높은 업체를 선정

○ 제안서 평가 참여 안내

1) 일 시 : 별도 통보

2) 준비물

- 대표자 : 신분증
- 대리인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 중 1개 증명서

3) 참여인원 : 3인 이내

○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9. 계약체결 및 낙찰자 제출서류

○ 낙찰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 기간 내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병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 계약 시 제출서류

1) 산출내역서 1부
2) 청렴계약,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각1부
3) 계약보증증권(계약금의 100분의 10 이상) 및 전자수입인지 각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5)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6) 계좌사본 1부
7) 국세, 지방세,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8)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이행 확약서 각 1부
9) 관련 영업신고증 각1부
1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점검표, 교육일지 등 각1부
11) 대리인 제출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중 1개 가입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12) 기타 병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4항(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 안전보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 제출하는 내역서에는 인건비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노임단가는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을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나라장터에 사전에 규격을 공개한 후(사전규격공개) 규격에 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실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 진행중에는 별도의 규격에 관한 이의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적십자병원 재무원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앞자리만 기재)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번 호	제26－39호	입 찰 참 가 서 류 제 출	2027.01.04. 10시까지
	입 찰 건 명	**서울적십자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위탁관리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5% 이상 ○ 보증금납부방법 : ○ 보증액 : 금 원정(₩)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앞자리만 기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입찰보증금서(증권 또는 납부 증빙) 1부
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8부
4. 제안서 전산파일(USB) 1부
5. 입찰공고서 내 제출 안내 서류 각1부

2026. . .

신 청 인 : ㊞

서울적십자병원 귀중

(서식2)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